

평생교육원 운영규정

- | |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정 : 1998. 9. 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5. 5. 13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00. 3. 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7. 2. 28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01. 9. 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8. 8. 31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02. 3. 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9. 6. 18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08. 2. 18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9. 11. 29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2. 6. 29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20. 3. 13. |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원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 교”라 한다) 부설 평생교육원(이하 “본 원”)이라 칭한다.

제2조(설립목적) 본 원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위치) 본 원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8 본교 내에 둔다.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조직) ① 본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부원장 및 각 과정별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<개정 2019.11.29.>

② 교육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9.11.29.>

③ 지도교수는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개정 2019.11.29.>

④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

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, 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.<신설 2019.11.29.>

제5조(교직원) 본 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.

제 3 장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 ① 본 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③ 총장은 본 교 직원 중 간사 1인을 임명한다.

④ 간사는 본회의 진행 및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7조(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9.06.18.>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
4.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
6.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7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9조(의결)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4 장 교육과정 운영

제10조(학습기간) 본 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.

제11조(학습일수) 본 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.

제12조(지원자격) 본 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. 다만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 학력·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3조(선발방법) 본원의 수강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4조(교육과정 개설 등) 본 원의 교육과정은 수시로 정하며 학습기간과 인원은 각 과정별로 결정한다.

제15조(학습비 및 강사료) ① 본 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.
- ③ 교육과정별 학습비와 강사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6조(수료 및 수료증 교부) ① 본 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% 이상 이수한자로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<별지>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 5 장 학습생 활동 및 포상

제17조(자치회)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-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.

제18조(학습자활동의 금지) 학습자는 본 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, 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제19조(포상) ①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.

- ②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6 장 회 계

제20조(회계년도) 본 원 회계년도는 본 교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21조(예산편성) 본 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

제22조(수입원) 본 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총당한다.

1. 학습료
2. 본 교 보조금 및 기타보조금
3. 위탁훈련 지원금(위탁훈련 시)
4. 기타 수입

제23조(예산 및 결산) 본원의 회계업무는 본 교 예산회계업무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7-3-1 평생교육원 운영규정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>

평생-○○○호

수 료 증

성 명 :

생년월일 : 년 월 일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
()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수원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장